

2003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
2004년 2월 10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타방체약당사자 영역 안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이 협정에 따른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가 이 분야에서 사업상 선도적 역할을 촉진할 것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 및 그 밖의 재산권
- 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회사 또는 어떠한 기업에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 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 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 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 바.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영역 안에서 임차계약상 임차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

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이 관련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그러한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 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상사·설립체·조직·기업 또는 협회와 같은 모든 실체를 말한다.

4. "영역"이라 함은 각각의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오만왕국의 영역 및 당해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동 지역에서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

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에 대한 대우

1. 첨부된 의정서의 규정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에 참여 또는 가입함에 따라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특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조세와 관련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보상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 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용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되거나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 가능한 상업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수용결정의 집행과 관련된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함으로써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동 지분 또는 회사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 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금
- 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 및 제3국 국민의 소득
- 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 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
- 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이루어지며, 경상거래에 유효한 환율 또는 송금당일에 유효한 공식환율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율로 이루어진다.

제7조 대위변제

1.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에 대하여 부여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 가. 당해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자격을 가지는 것

2. 대위되는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 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구제조치는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 분쟁은 일방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사법 또는 행정당국

나.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분쟁이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일방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1)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

(2)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의 규칙

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형태의 분쟁해결절차

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4.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이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양 체약당사국 모두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선정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이하 "중재판정부의 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행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정한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 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가가 자국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협정이 발효되기 전이나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제기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발효·유효기간 및 종료

1. 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로부터 1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최초 또는 그 이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종료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더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3년 10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만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의정서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이 항의 규정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특정한 혜택과 권리를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